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62호

「대전광역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제한규정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 제한 규정을 완화함(안 제19조제1호).

3. 의견제출

- 가.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건설 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lgsung64@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너비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를 "(너비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중 해당 도로 변에서 가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개 정 안
제19조(가설건축물) (현행과 같음) 1 ·····
·····(<u>너비 20미터를 초</u> 과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중 해당 도로 변에서 가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3.(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
-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 12.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15.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u>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법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법 제64조 및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및 제49조는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인정된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61조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 ⑦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 내로 하다.
- ⑧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 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 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 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① 삭제 〈2010.2.18〉

[전문개정 2008.10.29]